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우천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우천학원(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우천학원(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〈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〉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해당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해당사항 없음
계				

붙임 : 1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2년 4월 일

학교법인 우천학원

감사 강 순 자 (인)

감사 임 동 준 (인)

피감사 기관장
2022년 04월 일
학교법인 우천학원
이 사 장 오 형 기 (인)

피감사 기관장
2022년 04월 일
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
총 장 이 혜 성 (인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우천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우천학원(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우천학원(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우천학원(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)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2년 4월 일

학교법인 우천학원

감사 강 순 자 (인)

감사 임 동 준 .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명 사무국장

성명 송 필 순 (인)